

서 3 4 3 2

1973. 1. 20.

총책임: 김동호(金東浩) 97-3  
제작: 김동호 97-3  
제작일자: 1973. 1. 20.  
판권: 서울특별시립도서관  
등록번호: 78-0116-0000



서

도

○ 총 차

제 1285 호	서울특별시 출판·보관·사랑 소설집 출판기념 축하	3
제 1286 호	서울특별시 제 1회 청년문학상을 수상한 작가의 축하	3

○ 고 차

제 14 호	도서제작 소고민경 (제작)	6
제 15 호	학술원총장 및 출판총괄회의장	7
제 16 호	서울특별시지방총회제작팀	8

○ 중 차

제 9 호	도서제작을 위하여 출판기념 축하 도서제작 심포지엄	6
제 10 호	일반인 출판기념 출판기념 축하 행사를 개최한 작가	10
제 11 호	도서제작을 위하여 출판기념 축하 행사를 개최한 작가	11

○ 사 헌

1. 이 출판물을 한정된 범위에서 볼여야 한다.
2. 이 출판물을 다른 사람에게 유통하는 행위는 금지된다.

## 서울특별시

제 342 호

시

보

1973. 1. 27. 13-1

규 칙

서울특별시 중기판티사업소직제중 개정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 백 시

1973년 1월 26일

④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85 호.

서울특별시 중기판티사업소

직제중 개정 규칙

서울특별시 중기판티사업소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4조 제 1항중 「운영체와 경비체」를 「운영체, 경비체와 경사체」로 하고 「경비제장」을 「경비제장과 경사제장」으로 하며 제 2항 제 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경 사 체

가. 중기의 신규출판점사

나. 제작점사, 제작점사연기

다. 구조변경점사, 일시점사

라. 기타 중기점사에 관한 사항

부 칙

이 규칙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.

서울특별시자치위원회 실무부칙제중 개정 규칙을 이에 공포한다.

서울특별시장 양 백 시

1973년 1월 26일

⑤ 서울특별시 규칙 제 1286 호.

서울특별시자치위원회 실본부

제 10조(판리과)

서울특별시자치위원회 실본부 직제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 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제 5조(판리과) ①판리과에 서무처, 기획처, 경비처, 운영체와 조달체를 두고 제작은 자발행자사무반으로 한다.

②판리과의 세금운송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.

1. 서 무 처

가. 물자, 재화 및 기밀

나. 현금, 목수, 금액, 희생민 교육

다. 홍종용품의 구매및수수료또한 관리

라. 신장 및 미술판리

마. 회의 회의

바. 타과제 수령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항

2. 기 획 처

가. 자치위원회 행정체와 연계한 계획과의 조정

나. 수도 기본운영계획 및 그 시

제 3423.	시	보	1973. 1. 27
1. 행정부회		제 3423.	
아. 예산 및 기재(국내)		제 3423.	
나. 국공제회 및 국공조달		제 3423.	
마. 차관에 관한 사항		제 3423.	
2. 경제부		제 3423.	
가. 출입국 관할 및 청사		제 3423.	
나. 회계감사 및 물류영수증 관리		제 3423.	
감사일회		제 3423.	
다. 지출현안 행위부의 정비		제 3423.	
라. 전쟁용지 기지의 배임처분 및 보상		제 3423.	
마. 전쟁용지 전시지 관리소송 및 증거		제 3423.	
바. 고장자산회계		제 3423.	
3. 금고부		제 3423.	
나. 금고에 관한 사항		제 3423.	
4. 운암부		제 3423.	
가. 수송체계 및 운수수입 체정에 관한 사항		제 3423.	
나. 세운정 및 경제보		제 3423.	
마. 운송기구 조류제작		제 3423.	
라. 운송기구 및 항법제도에 관한 제 6조(제작조사과) ①제작조사과에 지정부		제 3423.	
제작조사과에 대한 사항		제 3423.	
마. 지하철 부대 사업운영에 관한 사항		제 3423.	
라. 일정선진화 관할 사항		제 3423.	
나. 운수경영인과 가정회의·연하 사항		제 3423.	
라. 영업설비 및 유통에 관한 제 6조(제작조사과의 제작분장사무는) ②제작조사과의 제작분장사무는, 다		제 3423.	
		다. 제작분장사무는, 다	
		다. 제작분장사무는, 다	

## 1. 출석자

- 가. 국무총리·한상희·이종근·기본교수  
·최재희  
나. 지방언론인·기준회·계정과  
·조경우  
다. 노동·민족주권·체육회·개최  
·국·소방  
마. 경찰·우리당·축구사업회·제  
·체육회  
바. 노동·민족·주체에·우하치·아  
·니하운·송창

## 2. 제작자

- 가. 보우센에게·증명조정  
나. 보우·임기기준·시발·임·증명  
·의·증정·자·증정  
마. 보우영·증명·증명화  
바. 보우증명서·증명  
바. 보우증명서·증명  
마. 보우증명서·증명  
가. 보우·증명·증명  
사. 보우증명서·증명·증명증정  
바. 보우증·증명증정·증명증정·증  
·증증  
마. 보우증·증명증정·증정  
사. 보우증·증명증정·증정  
마. 보우증·증명증정·증정  
가. 증명증정·증정

## 3. 제작자

- 가. 보우증·증명증정·증정

건축물의 계획·설계공사·발주

·시공감독

- 나. 지상·금속·장관방기타·설비  
·화·시설에·관련·제작·설계·  
·시공·감독

## 4. 보수자

- 가. 보도의·집정부의·및·구조대  
·화재·관련·사관  
나. 보도의·체지방·및·설계체조  
·화·체육활동·환경·시공·시공감독  
다. 보도·보수·제작·제작·설계·시공  
·체육장을·다음과·같이·한다.

제1조(공작전기자) ①공작전기자에  
전주제·전목제·전효제·통신제와  
수령기·제작·구조·설계제작·전미  
설장과·설고제장은·자발전기자·자조·  
증진제장은·자발증진기자·증진·제  
증진기자자로··자발기제·증장은·제  
증기자자로·보한다.

②공작전기자와·제작을·감수하는·대  
용·지호와·한다.

## 5. 제작자

- 가. 파내·임무의·증·증정·임  
·조정  
나. 증·증정·증·증정  
다. 전·전·전·전·전·전·전  
·증·증·증·증·증·증·증  
·증·증·증·증·증·증·증

13-6 제 342호

시 보

1973. 1. 27.

시 공급국	부 지
마. 과내 마을 주민에 속하지 아니하는 사람	이 규칙은 중요한 날로부터 시행된다.
2. 전 미 계	
가. 수전, 금전 및 조명시설의 제작, 설치, 사용장치	
나. 전자 신호의 제작, 설치, 사용장치	고 시
3. 신 호 계	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4호
마. 차상 및 차상신호 설치의 제작, 설치, 사용장치	도시계획 소모면경 (제지)
나. 소관신호시설 관리의 말주	
4. 물 신 계	1. 당시 본래 도시계획 소모를 도시계획법 제 12조, 제 13조 및 종합시행령 제 6조 제 1항 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변경 (제지: 한다.)
마. 유선, 무선통신시설의 제작, 설치 사용장치	2. 관계 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도시계획과 및 시민봉사단과 관구청 시민봉사단에 이의하여 도시 소유자 및 이해 관계인에게 보이 고 있음을.
나. 소관통신시설 관리의 말주	
다. 전설 공사의 사용면경 대의체	
5. 차량기지 계	
마. 차량설계에 관한 제작 및 제작설정	
나. 동력차량설계의 기관부 설계	1973. 1. 24.
다. 운작장 설비의 제작 및 기준 설정	서울특별시 시장

43422

1973.1.27. 13-7

수 분		총 유	유 내	연도	부 험	연	기	경	기	경	비	교
기정		4.2	5	3.64	침 충	5-6	양 충	1-2				
재정		4.2	5	3.64							재 지	

설명 : 고지서로 (도로)은 시장부지개화 과 및 시민주사실과 차량구성 시 인용  
수면에 고지서)

## ◎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 호

(면적 340 m<sup>2</sup>)

서울특별시 광진구 관내에  
위치한 다음 부지의 토지  
면적은 다음과 같이 정하여  
제 16 호로 고지한다.

1973. 1. 24

## 서 울 특 별 시 장

1. 이기현부지 (1973. 1. 24.)

2. 이기현부지 (서울특별시 성동구 도로명

10-90-2

3. 이기현부지 (서울특별시 1-4호

1973. 1. 20-1

면적 340 m<sup>2</sup>

4. 관용면적 : 광작물심지면적

12.562 m<sup>2</sup>

5. 욕 지 : 관 왕자선 90-90-2

도사례지

6. 수 허가증번호, 성명 : 서울특별시

승인구신분증 1-470

축양재단 이재용부

서울특별시 차사람

이 계 속

13-8 4342-1

시

보 1973. 1. 27.

⑥ 서울특별시 고시 제 16 호  
서울특별시 문화재 지정  
서울특별시 문화재보호회에 제  
시

6호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 
지방문화재를 지정하고 증조부 예조  
조지, 유경에 따라 다음과 같이 그  
사항이다.

## 서울특별시 지방문화재 지정 목록

지정번호	문화재명	소재지	기록번호
제 16 호 시 1-4	설농당	용산구 우동 138	73. 1. 17
제 17 호 천연기념물	황금리 풍나루	영등포구 양천동	"
제 18 호 "	화암동 노비나루	성동구 화암동	"
제 19 호 민속자료	서영교 무군당	용산구 서빙고동 174	"
제 20 호 "	제암동 보현산사지	서대문구 내각동	"
제 21 호 "	인왕사선사원	서대문구 인왕산동	"

1973. 1. 26

## 서울특별시장

공고

⑥ 서울특별시 공고 제 9 호

도시계획승인·건축허가 및  
중앙도로이용증정 및 경정  
1. 서울 도시계획 승인지역 일부  
변경과 중앙도로이용 증정이 전부  
후 고시 제 53 호 (72. 12. 23) 를

정찰 고시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2  
제 6항 및 통일시행령 제 6조 제 1항  
제 1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
이 공고한다.  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
도시계획과 및 용해문구청에 이자하  
여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에게 보이  
고 있습니다.

1973. 1. 26

서울특별시장

1973. 1. 27. 13-2

## 3. 충도지역 행정부록 보서

제	목	내	내	(원)
번호	항	내	내	내
①	기	326,681,032	(감) 23,800	326,657,232
②	기	17,110,204	(부) 23,800	17,134,000
③	기	47,059,500		47,059,500
④	기	331,125,244		331,125,244
⑤		720,876,000		720,874,000

## 4. 충남도지역 행정부록

제	목	내	내	(원)
번호	항	내	내	내
①	충남도지역시장 충남소방본부 등	33		16,500

## 5. 관계 도별 고시와 같은 (도민 44)

주민은 선출직인 고시제작과 5. 관할구청 사업부서별로 보관.

## 6. 관할구청 (서울) 제 25

고시제작을 위하여 특별한 경비  
증정으로서 관할구청 예산부서

· 관할구청 예산 담당부서에 따른

2.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에 관계된  
이 도서소유자 및 관계기관에  
보이고 있습니다.

1973. 1. 24.

경상남도청

10-10-4342.1

서울특별시

1973. 1. 27.

## 10-10-4342.1. 도번부정 1973. 1. 27.

번호	금액(원)	기수	비고
상대방주 우우우 39-11	984	1	배당
" 39-44	720	"	
" 39-15	475.70	"	
" 39-46	522.70	"	
" 39-47	588.70	"	
" 39-18	467.70	"	
" 39-19	57.30	"	
" 39-50	299.90	"	
" 39-51	301.60	"	
" 39-52	288.10	"	
" 39-53	287.70	"	
계	5,000.00		

2. 노연포지와 짧음 (도법생략)

도연은 서울시청 및 대관수청에 보관

⑤ 서울특별시공10호 10호

일반민주당(민주당)  
영시행위가원(英行院)1. 서울특별시 표지 제10호 (71. 6.  
25.)은, 국가원(國大院) 주택지  
교통사업과 시행자율 표지 제10호제24호 및 종별 시행령 제4조 제  
1항 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 
과 같이 변경이가 하였기 공고한다.

1973. 1. 26.

서울특별시장

제342호

시

1973. 1. 27. 13-11

1. 사업설명서 (사업계획서 및 토지보증서 등)  
증산 103-1 호서 3월자
2. 사업비증명서 (임단지주 및 사업자등록증  
증명서 : 주민등록증 등록증명증)
3. 사업사업자등록증, 성명  
증명서 (주민등록증과 사업증명증을 결합하고  
증명서 : 주민등록증 주민등록증  
증명증 등록증)
4. 사업비 입금증명서  
증명증자 1. 71. 9. 27.  
증명증자 1. 73. 6. 30.
5. 기타 서류
6. 품목별 사업비 증명서 (사업자등록증  
증명증자 및 주민등록증 증명증)

## ⑥ 서울특별시공고제 11호

지하고속도로 제 1호선 부대시설 민영화  
당시 관리 지하고속도로 제 1호선  
부대시설이 건설부고시 제 535호  
(72. 12. 23)로 변경설정 고시  
되었기 도시계획법 제 12조에 5년  
및 동일시 행정 제 4조에 1호에 1호  
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 
공고한다.

본래도서는 서울특별시 도시계획국  
도시계획과, 지하철건설본부 및 관할  
국장 시민봉사실에 이치과기 도시계획  
국과 및 이 대관계인에게 보이고 있  
으나 다음과 같다.

1973. 1. 26.

서울특별시장

## 가. 지하고속도로 제 1호선 부대시설 민영화 조례

주문	제고 부대시설명	위	면적	면적(㎡)	면적(㎡)
기점	1. 서울특별시공장 서울역 광장	22.8	220	5,016	
중간	2. 서울특별시공장 서울역 광장	18.0	210	3,600	
기점	3. 동대문경유장 6호 78-25-1111-55-1111	22.8	220	5,016	
중간	4. 동대문경유장 6호 78-25-1111-55-1111	18.0	210	3,600	
기점	5. 경기동경유장 51-4호 73-12	22.8	220	5,016	
중간	6. 경기동경유장 51-4호 73-12	18.0	210	3,600	
기점	7. 청량리경유장 6호 78-25-1111-55-1111	22.8	220	5,016	
중간	8. 청량리경유장 6호 78-25-1111-55-1111	18.0	210	3,600	

별첨 표면 도면과 함께 (도면설명)

보증금 서울시립 도시계획과, 지하철건설본부, 관할구청 시민봉사실에 보관,

32-12 제 342 호

시      보

1973. 1. 27.

## ○ 전설부 (서울) 12 시제 1 호

이 보지소유자 및 관계인에게 보이게  
한다.

기하고속월도 제 1 호선  
부대시설지적승인 표시  
1. 지하고속월도 제 1 호선 부대시설  
침식이 따라 지적승인을 도시계획  
법 제 13 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 
과 같이 고시한다.  
부산도서관 서울특별시에 미지하  
로연은 서울시립에 보관.

1973. 1. 26.

전설부 장관  
가. 지하고속월도 제 1 호선 부대시설  
지적승인표시 1 호선  
별첨보면 표시와 같음.

## 지하고속월도 제 1 호선부대시설지적승인표시

번호	부대시설명	위      치	폭 (m)	면적(m <sup>2</sup> )	비      고
1	서울정유장	서울역광장	18.0	210	3,600
4	부대운정유장	1. 신동	18.0	210	3,600
5	제기동정유장	1. 주동및제기동	18.0	210	3,600
7	성암리정유장	성암리광장	18.0	210	3,600

## 사      명

5호동을 관할.

종로구 군부를 관할.

○ 1973. 1. 24

경기부

충      구      지방행정주체로      경기부  
충주군수로사무소 군부를 관할.      시보관부를 관할. (73. 1. 1~  
73. 2. 28.)

경      구      '지방행정주체로      충      구  
서울특별시 관할을 관할.  
지방행정주체로      관할.

지방행정사무관에      관할. (73. 3.  
1~)

3호동을 관할.

서정체발달방법에 5개 발달방에 보합.

100

卷之三

1973.1.27.13-13

제 9 부  
보호자문서

영광도주 서방 영광 도주 수 1회  
영광부사비보호지우수 1회

— 1 —

서예 춘추 (서예 명령 춘추) 바찬 차  
복리과 (마진 (서정미 대공임 춘구요상))

卷之三

© 1993 - 1994 - 23

卷之三

3호상품 유통  
불법파 유통조사 지향에 보합.

6 1273 - 1 - 24

## 노령전수원 지방행정주사 우체국

四六七 二十九

수학자수 지방행정수사 과정기

五常市小學四年級學生書寫

1

기방을 끌어주고, 바이오

卷之三

中華書局影印  
新編中華書局影印